

D-2(유학) 비자 외국인 유학생 연구과제 참여 제한 안내

□ 추진목적

- 법무부 체류관리과 「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,(2019. 6.11.) 시간제 취업 원칙에 따른 세부사항 반영
- 관련 지침 및 외국인 유학생 연구프로젝트 참여 관련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 기준 마련

□ 시간제 취업 기본원칙에 따른 제한사항

-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됨
- 단순노무에 한하여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는 경우에 허용하나, 전문분야인 연구는 제외
- 석·박사과정에서 재학생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소속대학 이외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'학생연구원'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, 연구(E-3)비자로 자격 변경 필수(고용계약서 필요)
- 소속기관 대학에서 학점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수당을 받는 경우만 가능

□ 관련지침 :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(법무부 체류관리과)(2019.6.11.)

<p>6. 시간제 취업</p> <p>가. 기본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,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- 전문 분야(E-1 ~ E-7)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<p>마.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(허가제외대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,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<p><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(허가제외대상) 예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십, 연구프로젝트*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☞ 인턴십이 학점 취득과 연계된 필수과정인 경우 별도 허가 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당 수령은 허용하되, 졸업전 취업 형태의 인턴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도 아님 ☞ 연구프로젝트는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대학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, 이외 학점 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엔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이며,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됨

* 연구프로젝트 참여(필수/선택 무관)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,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(지도교수와 함께 참여하더라도 프로젝트 주관이 소속 대학이외의 기관인 경우는 허가 필요)하며, 대학 외부에서 주관(공동주관은 제외)하는 연구프로젝트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

□ 관련 지침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외국인 유학생 연구과제 참여 제한

구분	시립대 소속 외국인 유학생	타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
시립대 연구과제 참여	법무부 체류관리과 「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」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(허가제외대상) 연구프로젝트* 참여 경우에 한하여 허용 ※ 본교 외국인 유학생 연구프로젝트 참여시,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[붙임1]	전면금지
타대학 연구과제 참여	전면금지	해당없음

※ 서울시립대학교 외국인 학생 프로젝트내 연구원등록시 지도교수 확인서 2020. 3월 자동 출력 기능토록 산학협력단 시스템 구축 추진

□ 위반자 처리기준(허가없이 취업하는 경우)

- 1차 적발시 : 불법취업 당사자와 기관, 고용주에 대하여 각각 범칙금 부과
- 2차 적발시 : 예외없이 강제추방